

LETTER TO THE EDITOR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독자투고(To The Editor)

이동훈

서울새로운내과

Dong Hun Lee

Seoul Saeroun Internal Medicine, Youngin, Korea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Lee 등¹⁾의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지침에 대해서 저도 5, 6번 문항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침을 따를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지침이 심사평가원 지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안이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본원에서 일부 난치성 환자 치료로 프로토펙프 억제제와 히스타민수용체 길항제의 병용처방한 결과 심사평가원에서 지침을 초과한 처방으로 통보받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소화기학회지 57권 2호에 해당 내용이 실려서 문의드렸습니다. 학술지에 심사평가원 지침을 고려하기 어렵겠지만, 실제 학술지의 임상진료지침은 임상 진료 현장에서 대부분 응용되어 진료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FERENCE

1. Lee JH, Cho YK, Jeon SW, et al.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Korean J Gastroenterol 2011;57:57-66.
-

저자회신(Reply)

이준행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

Jun Haeng Lee

Department of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보내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임상진료지침은 전적으로 의학적인 문헌고찰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물론 감독기구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지만 임상진료지침 본문에 권고된 내용이 감독기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기구의 기준은 의학적 내용 이외에 정치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진료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학회에서 임상진료지침을 홍보하고 전파할 때 지적해 주신 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